문의사항
이진주 관세사 T/ 02-6011-3035 메일/ jjlee@esein.co.kr

세인 소식지
www.seincustoms.com

2015.4.15

'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' 개정 요약 안내

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개정취지

-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 규정 개정
-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

시행일자 : 15. 4. 13. (월)

2. 개정내용

□ **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 등 심사기간 개정**

- 서류심사 기산일을 "서류심사 위탁한 날"에서 "서류심사 시작일"로 개정
- 현장심사 기간을 기업심사 산정 방식에서 민원사무처리기간 산정 방식으로 변경*하고 심사 실정에 맞게 연장

※ (현행) "15일(공인기준만) 또는 20일(통관적법성 포함) 이내, 연장 10일 이내", 토.일 제외

→ **(개정) "현장심사 시작일부터 15일 또는 30일 이내, 연장 15일 이내", 토포함, 공휴일 제외**

□ **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**

-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**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기간 및 보완기간을 단축(6개월→3개월),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 단축(2개월→1개월)**